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9호,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RCEP 회원국

20. 이스라엘

제24조제5항제5호 중 “미합중국·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을 “미합중국·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으로 한다.

제24조제12항 중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2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RCEP 회원국

13. 이스라엘

제24조의2제1항 중 “콜롬비아공화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콜롬비아공화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인도네시아공화국 · 이스라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각각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 ----- ----- ----- -----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설></u>	<u>19. RCEP 회원국</u>
	<u>20. 이스라엘</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4.(생략)	1. ~ 4. (생략)

5. 미합중국 · 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 · 호주 · 뉴질랜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⑥ ~ ⑪ (생략)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 · 캐나다 · 베트

5. 미합중국 · 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 · 호주 · 뉴질랜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이스라엘-----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정부

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⑬ ~ ⑮ (생략)

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이스라엘-----

⑬ ~ ⑮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RCEP 회원국

13. 이스라엘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
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
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이 조에
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
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배제) ① -----

----- 콜롬비아
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
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
도네시아공화국·이스라엘---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856